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29
----------	-----

제출년월일 : 2006. 4. .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정이유

2006. 1. 1부터 시행된 지방계약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계약 과정의 적정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가 중심으로 계약심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각종 주민 생활 관련 공사에 대한 주민 참여 감독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코자 함.

2. 주요내용

《계약심의 위원회에 관한 사항》

- 구성 : 위원장(경리관-당연직)을 포함한 15인 이내로서 구청장이 위촉
- 위원의 자격(시행령 제106조)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의 관련 분야 교수(부교수, 조교수 포함)
 - 시민 단체(비영리 민간단체).관련 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학회에서 추천한 자
 - 관련 분야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
 - 해당 분야의 기술 자격증 소지한 자 등
- 위원의 임기 : 2년, 연임 가능
- 위원회의 기능

< 심 의 사 항 >

-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 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 계약 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 낙찰자 결정 방법에 관한 사항
-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심의 대상

-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인 공사
- 추정가격 5억원 이상인 물품 제조, 구매 및 용역
- 부정당업자에 대한 처분, 기타 구청장이 부의한 사항

○ 회의소집 및 심의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5인 이상 10인 이하의 분야별 소위원회 구성가능

- 소위원장 : 계약심의 위원회 위원장
- 소위원회 심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

○ 위원 참석 수당 등 지급 근거 마련

<<주민참여감독에 관한 사항 >>

○ 주민 참여 감독 대상 공사 상한 금액 설정 : 10억원 이하인 공사

- ※ 감독 대상 공사(시행령 제60조) :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으로서 상한 금액은 조례로 정함.

○ 주민 참여 공사대상 : 보안등 공사, 보도블록 설치 공사, 도로개설 및 확 · 포장공사, 공중 화장실 공사 등

○ 감독자 실비 지급 기준(조례 안 제12조)

- 수당 : 20,000원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중 “5급상당

공무원”의 일비 지급 기준 적용(20,000원)

○ 감독자의 자격(시행령 제57조) : 당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민 대표자 또는 주민 대표자가 추천하는 자

- 당해 공사의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국가 기술 자격 소지자
- 당해 공사의 관련 업종에서 1년 이상 현장 관리 업무 등 경험자
- 건설 관련 단체, 학회 추천자
- 당해 공사 현장의 새마을 지도자 등으로서 대표성 및 해당 분야 지식이 있는 자

○ 주민 감독 범위(시행령 제61조)

- 당해 공사 관련 주민들의 건의 사항 전달
- 시공 과정의 불법·부당 행위에 대한 시정 건의
- 설계 내용대로 시공 여부 감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제7672호, 2005.8.4공포, 2006.1.1시행)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19239호, 2005.12.30공포, 2006.1.1시행)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315호, 2006.1.2시행)

나. 합의사항 : 필요없음

다. 예산조치 : 추가경정예산 반영예정

라. 입법예고 (2006. 3.27 ~ 4. 2) 결과 : 의견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과 법 제16조제2항, 제4항 및 영 제59조 및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 참여 감독자의 실비 지급 기준 및 주민 참여 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상한금액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영등포구의 경리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로 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영 제10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 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3.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4.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 자격 취득자

5. 관련 법령에 의하여 주무 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 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6. 국가 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

제 3 조 (임무 및 임기)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 중 당연적인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계약담당주사로 한다.

제 4 조 (심의 대상) ①위원회는 법 제32조제1항에서 정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다만 긴급한 재해 복구 사업 및 『조달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한 사업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 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 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 방법에 관한 사항
4.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5 조 (회의 소집)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법 제32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심의함에 있어 심의 안전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6 조 (소위원회) ①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내용에 따라 영 제

107조의 규정에 의거 분야별(공사, 용역, 물품)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⑤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 7 조 (심의 요청 등)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 8 조 (심의 기간 및 심의 결과 통보 등) ①구청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에 부칠 수 있으며, 당해 심의 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9 조 (의견 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 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 10 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심의 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로 계약 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4. 기타 품위 손상 등으로 그 직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 11 조 (주민 참여 대상 공사 및 상한 금액) 주민 참여 감독 대상 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연간단가계약제외)의 공사로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대상으로 하며 감독 일수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 부서장이 정한다.

1. 하수도 설치 공사
2. 보안등 공사
3. 보도블록 설치 공사
4. 도로개설 및 확·포장 공사
5. 사회복지시설 등 공용건축물 증·개축공사
6. 공중화장실 공사
7. 공원녹지관련 공사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제 12 조 (수당 및 여비 등) ①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 전문가, 주민 참여 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수당·여비·심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 관련 위원장 및 계약담당

자,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 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13 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외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수당 및 여비 등 지급기준(제12조 관련)

구 분		금액(원)	비고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수당	100,000	참석·심의
	기술 수당	200,000	전문가에 의뢰
	여 비	민 간 : 5급상당 공무원 : 해당 직급	「공무원 여비 규정」
	교 통 비	민 간 : 5급상당 공무원 : 해당 직급	"
주민 참여 감독자	수 당	20,000	일비